

『인천광역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8월 19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전후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인천광역시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함으로써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
(안 제1조~제2조)
- 민간인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하는 시장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민간인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 등의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 규정함.(안 제4조)

○ 인천광역시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한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함.

(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31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참조 :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13, 팩스 032-440-876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전후의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인천광역시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란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한국전쟁을 전후로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희생자를 위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위령제 지원 등 여러가지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기준) 시장은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지원여부를 판단한다.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에 대한 조치
2. 민간인 희생자가 사법부의 판단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인천광역시에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3. 군·구가 제1호와 제2호의 내용을 민간인 희생자를 대신하여 인천광역시

에 요구하는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인권증진과 화해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3.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지
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령 검토와 발취 사항

관계법령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관련법규 정비대상	
관련자료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실규명의 범위)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진실을 규명한다.

1. 일제 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2. 일제 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3.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4.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5.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6.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제3조에 규정에 의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제외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의결로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3조(국가기관 등의 협조의무) ①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은 적극 협조하고 진실 규명에 필요한 편의 제공 의무를 진다.

②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게 위임하거나 또는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진실규명 관련 국가기관은 자체 진실규명을 위한 위원회 등 특별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 수반요인 : 위령사업(위령제 지원), 간행물 발간
2. 비용추계의 전제 : 간행물 1회, 합동위령제 매년 지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지출	위령사업	5	5	5	5	5	25
	간행물발간	20					20
	소계	25	5	5	5	5	45
수입	국비						
	지방비	25	5	5	5	5	45
	소계	25	5	5	5	5	45
총비용		25	5	5	5	5	45

4. 재원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시비	일반회계	25	5	5	5	5	45
	특별회계						
	기금						
합계		25	5	5	5	5	45

5. 부대의견 : 해당사항 없음

6. 작성자 : 자치행정과장 윤병석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 5,000천원

○ 합동위령제 지원

- 1개 구 × 5,000천원 = 5,000천원

2. 관련 자료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 20,000천원

○ 추진주체 : 시 직접(연구용역) 또는 단체 지원(유족회)

○ 사업내용 : 인천시내 민간인 희생사건 관련 간행물(예, 백서)발간

※진화위에서 결정된 인천시내 민간인 희생사건 목록(총 11건)

관리번호	해당군구	사 건 명	결정일
1-16	중구 (월미도)	월미도 미군폭격 민간인 피해사건	08.2.26
1-25	강화군	강화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08.7.8
1-57	강화군	강화(교동)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09.3.2
1-140	중구 (동인천경찰서)	서울 인천지역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10.6.8
	중구 (인천경찰서)	서울 인천지역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남동구	서울 인천지역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강화군	서울 인천지역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옹진군 (덕적도)	서울 인천지역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옹진군 (영흥도)	서울 인천지역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2-57	동구	경기 남부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사건	10.6.22
3-4-17	강화군	국민방위군 사건(인권침해사건)	10.6.30